

현행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를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은 자배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²⁸⁾을 인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보면 배상책임보험과 자신을 위한 보험과의 보험금 청구시기와 청구 가능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대인배상 I, II/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확정’에는 ①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② 재판상의 화해·중재, ③ 서면에 의한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을 규정한다. 한편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이 되는 신체 또는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때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표 부록-1〉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여부와 청구 시점

구분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보험금 청구 시점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자동차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때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사고	사고가 발생한 때	

배상책임 지급보험금은 표준약관 제10조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소송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자배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의 합산금액이다. 약관에 기재된 항목은 대인배상 ‘상해(부상)’

28)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별표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의 경우는 ①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② 위자료, ③ 휴업손해, ④ 기타 손해배상금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이다. 대물배상의 경우는 ① 수리비용, ② 교환가액, ③ 대차료, ④ 휴차료, ⑤ 영업손실, ⑥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합산액을 그 기준으로 한다.

‘소송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은 ‘소송(민사소송,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인배상의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을 우선 적용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임의보험(대인Ⅱ)에서 부보하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에도 자배법과 표준약관에 의한 해석, 기존 판례 등에 명시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표 부록-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각 항목별 지급기준

구분	대인배상 부상	대물배상 분손
적극손해	① 구조수색비: 사회 통념상 필요 타당한 실제 발생한 비용 ②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일반실), 수술 및 투약 실비, 치아보철비(금주조관보철)	① 견인비: 2016년 신설 ② 수리비용: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타당한 비용, 열처리 도장료
간접손해	① 위자료: 상해급별로 15~200만 원 ② 휴업손해: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치료기간 내 보험회사가 인정) × 80% ③ 기타손해배상금: 식비(병원에서 식사 미 제공의 경우 등), 교통비(1일 8천 원)	① 휴차료: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 30일) ② 영업손실: 휴업기간 상실이익, 원상회복 소요 기간 내 30일 ③ 기타손해배상금: 대차료(동급모델, 30일, 비대차시 대여요금의 30%) 시세하락 손해(출고 2년 이내 차량, 수리비용의 10~15%)

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